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 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 잘못된 자구의 수정
- 적용시한의 명시

4. 주요골자

- 제3조중 “과세면제”를 “불균일과세”로 개정
- 제4조중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개정
- 적용시한 : 1994년 12월 31일까지

5. 검토의견

- 도시민의 생활편의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도매사업자가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율,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재산권, 기타권리에 관한 등기·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율 각각 100분의 50 경감토록 되어 있으나
- 조례의 내용과 맞지 않는 제3조중 “과세면제”를 “불균일과세”로 제4조중 “면제신청”을 “경감신청”으로 자구를 수정하고 현행조례에서 적용시

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시한을 명시하여 타조례와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개정이므로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본안과 같이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위원장대리 김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도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사제출)

(13시 56분)

○ 위원장대리 김기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국장 유의재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 고)